

인공지능 민중통제를 위한 시민사회 개입전략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1. 현장의 분투

인공지능 산업은 환경자원, 노동, 데이터에 대한 지구적 수탈과 착취적 추출에 기반하여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기존 사회의 불평등을 재현하거나 증폭시키며 작동한다는 것 또한 비밀이 아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문제를 인권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해결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렵다. 필립 알스턴 유엔 빈곤과 인권 특별보고관은 2019년 알고리즘에 기반한 디지털복지국가에 대한 보고서에서 “우리 현실에서 국가는 기술 산업을 인권이 걸린 문제로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 [인공지능] 신기술 부문은 거의 인권 공백지대(human rights free-zone)에 존재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A/74/493). 시민사회조차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유창함과 생산성, 그리고 그것을 더 예외적인 기술로 포장하는 결정론에 압도되어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삶과 노동의 구체적인 현장에서는 인공지능의 수탈에 저항하는 분투가 이미 시작되었다. 특히 조직화된 운동은 간헐적이거나 작은 승리를 조금씩 쟁취하며 이 기술의 지배적 권력구조, 그리고 신비화에 도전해 왔다.

국가적 수준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 일찌기 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이 적용되었다. 세계 곳곳에서 이른바 디지털 사회복지의 대상이 된 당사자들은 이에 맞서 싸워 왔다. 인권단체와 연구자들은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사회복지 급여자격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실업급여, 아동급여 등에서 이 불투명한 알고리즘이 부정확할 뿐 아니라 편향된 결정으로 수없이 많은 피해를 양산하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네덜란드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부정수급탐지시스템인 ‘시리(SyRI)’에 대한 공익소송이 제기되었다. 특히 시리는 실업급여, 장애인 수당, 주거 급여 등 사회복지제도의 대상자가 부정수급을 할 ‘위험’이 있는지 개인이나 가구별로 ‘예측’한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빈곤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리에 어떤 데이터가 사용되었고, 어떤 기준으로 위험 인물이 선별되었는지 공개되지 않았고, 당사자들은 왜 자신이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이 시스템은 저소득층 거주 지역 주민 수천 명을 복지 사기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조용히 분류하여 조사관에게 넘긴다. 이 시스템에 대한 주민회의와 공익소송을 조직했던 노동조합 연맹

FNV는 "사람들이 매우, 매우 분노했다."고 언론에 말했다. 결국 2020년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시리가 불투명하고 위법하게 인권을 침해한다며 운영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시리의 근거 법률이 사생활 침해에 대한 충분한 보호장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결하면서, 위험 평가 모델이나 지표를 공개하지 않아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투명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¹.

노동자들은 고용관계와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비밀알고리즘의 '예측'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도전해 왔다. 미국 휴스턴지역 학교교사들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에바스(EVAAS)'라는 평가알고리즘을 통해 직무평가를 받았다. 휴스턴 교육청은 평가점수가 나쁜 교사 85%를 해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상이 된 교사들은 자신의 점수가 산출된 방식과 해고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의를 제기하고자 했으나, 교육청은 이러한 요청들을 거부하였다. 평가알고리즘에 대한 정보가 이 프로그램을 제공한 업체의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심지어 교육청 자신도 이 민간업체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교사노동조합은 불투명한 평가 알고리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2014년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7년 법원은 교사들의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인정하면서, 영업비밀과 적법절차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공부문 의사결정에 비밀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². 알고리즘 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분투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 현장은 해당 교사들 뿐 아니라 공공부문 인공지능의 규범 수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공부문에서 사람에 대한 결정에 인공지능을 배치할 때 그 대상이 된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의제기가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인된 것이다.

회사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자동적인 방식으로 고용조건을 결정해 온 플랫폼의 노동자들 또한 분투해 왔다. 차량공유플랫폼 우버와 올라의 플랫폼 노동자들은 네덜란드에서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규정을 토대로 프로파일링 및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네덜란드 법원은 차량공유 플랫폼 올라와 우버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열람을 요구한 개인정보를 각각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했던 올라에 대하여 '부정행위 위험성 점수'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 노동자 개인정보, 업무 할당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프로필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 개인정보를

¹ 유뱅크스. (2019).; <<https://act.jinbo.net/wp/48107/>>; <<https://www.hrw.org/news/2019/06/10/disastrous-roll-out-uks-digital-welfare-system-harming-those-most-need>>; <<https://www.wired.com/story/europe-limits-government-algorithm-us-not-much/>>.

²

<<https://www.houstonchronicle.com/news/houston-texas/education/article/suit-challenging-hisd-teacher-reviews-could-have-5446879.php>>; <<https://www.houstonpublicmedia.org/articles/news/education-news/hisd/2025/03/21/516536/houston-ids-teacher-ranking-evaluation-system-passes-despite-opposition-from-teachers-parents/>>

노동자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지 않았던 우버에 대하여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노동자를 차단하는 데 사용된 개인정보와, 주행 업무 각각의 익명 평점을 노동자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³. 이 판결은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규정인 **GDPR 제22조**가 적용되는 방식에 대한 해석을 이끌어 냄으로써, 해당 노동자들 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시민에게 영향을 미쳤다.

2022년부터 생성형**AI**의 급속한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창작노동자들도 인공지능이 창출하는 고용조건에 대한 대응을 조직하였다. **2023**년 할리우드 파업은 ‘인류가 최초로 **AI**에 맞선 투쟁’으로 알려졌다. 특히 작가조합과 배우조합은 **64**년 만의 동반파업 끝에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합의사항을 쟁취하였다. 이는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노동자의 집단적 통제권 확보와 노동권 보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김하늬, **2025**).

한편, 경찰의 공공장소 실시간 얼굴인식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운동은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넘어 인공지능에 기반한 ‘생체 감시 국가’에 대한 견제와 알고리즘 편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대중화하였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시민사회운동은 **2018**년 경부터 비판적 연구자들과 연대하여 얼굴인식 기술이 백인 남성보다 유색인종 여성 등에 편향적인 실태를 드러내고 인종차별적 얼굴인식에 대한 대중적 반대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미국에서는 **2019**년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경찰의 얼굴인식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였고, 유럽에서는 인공지능법을 제정할 때 경찰의 공공장소 실시간 얼굴인식을 원칙적으로 금지(법원의 예외적 허가는 남음)하는 규정을 관철시켰다⁴.

2025년 미국에서 제**2**기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면서 빅테크 자본과 연합하여 세계적으로 산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압력을 전방위적으로 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GDPR**, 디지털서비스법, 인공지능법 등 디지털법 입법 과정에서 시민사회 개입으로 기술 기업에 대한 인권 규범을 포함해 왔으나, 최근 ‘옵니버스’ 법으로 디지털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시민사회는 이에 대한 저항을 본격화하면서 특히 규제완화 압력이 큰 환경운동과 데이터운동의 연대가 활발해지고 있다.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가 늘수록 데이터센터의 건설이 많아지고 그에 저항하는 움직임 또한 커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계속 유치되면서 그로 인한 환경 피해가 커지고 있다⁵. 미국은 앨라배마, 일리노이,

3

<<https://www.workerinfoexchange.org/post/worker-info-exchange-and-adcu-challenge-uber-and-ola-on-data-access-and-automated-decision-making>>.

4 <<https://banthescan.amnesty.org/>>; <<https://reclaimyourface.eu/>>.

5 <<https://techbrew.co.kr/news/?bmode=view&idx=166448621>>;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latest-news/malaysia-environmental-group-raises-concern>>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인디애나, 오하이오, 테네시, 미시간, 아이오와 등에서 야합적 방식으로 데이터센터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특히 농촌이나 저소득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이 지역 주민들에게 소음 공해, 대기 오염, 삼림 파괴, 전기 요금 상승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⁶. 미국 멤피스 지역의 환경운동가들과 지역 활동가들은 일론머스크 xAI의 데이터센터가 공기를 오염시키는 실태와 주민 건강에 미친 악영향을 폭로하면서 저항을 조직해 왔다. xAI는 데이터센터를 위한 발전시설로 가스 터빈을 "일시적 비도로용 엔진"이라는 명목으로 구축하면서 공청회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규제 감독을 피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 하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이 문제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었으나, 2026년 들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무허가 가스 터빈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공화당 우세지역에서마저 커져가는 주민과 시민사회의 저항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⁷.

인공지능 기술 산업의 수탈 구조에 대하여 정의를 찾는 운동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당면한 문제는 생산의 물적 조건을 추상화하는 정보자본주의 전략 속에 구체적인 삶의 경험이 지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신비주의와 불가피론에 갇힌다면 삶과 노동의 분투는 앞으로도 계속 은폐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본의 '추상화' 전략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삶의 경험으로 맞서는 것이다. 구체적인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치는 삶과 노동의 경험을 드러내고 부문을 넘어서는 연대로 맞서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 산업이 지구적으로 노동, 기후, 데이터를 수탈하고 추출하는 현장에서 정의를 요구하는 외침이 뭉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크로퍼드, 2022: 267-268).

인공지능의 생산구조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기초해 있으며, 불평등한 기존 사회의 패턴을 학습하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결과물을 산출함으로써 사회 불평등을 악화시킨다. 정의운동은 세계의 패턴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인권운동은 기후환경-노동-데이터를 가로지르는 저항의 연대로 세계의 패턴을 바꾸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을 제안한다.

오랫동안 우리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운동을 모색해온 정보인권운동은 지금의 세계에서 모든 산업의 기반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수탈적 구조에 도전하여

s-over-climate-pollution-caused-by-new-ai-data-centres-calls-on-govt-to-consider-only-renewables-powered-centres/>.

6

<<https://insideclimatenews.org/news/20082025/wilsonville-alabama-residents-against-massive-data-center/>>;

<<https://www.gpb.org/news/2025/12/11/just-selling-us-out-for-money-dekalb-residents-voice-opposition-data-centers-during>>;

<<https://fortune.com/2025/12/16/ai-data-center-backlash-republican-strongholds/>>.

⁷ <<https://time.com/7308925/elon-musk-memphis-ai-data-center/>>;

<<https://www.cnbc.com/2026/01/16/musk-xai-faces-tougher-road-expanding-memphis-area-after-epa-update.html>>.

정의를 찾고자 한다. 나아가 정보인권운동은 자본주의 논리를 추종하는 데서 벗어나 영향받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고, 개인의 권리를 넘어 사회적 권리로서, 집단적 권리로서 정보인권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2. 정보인권운동의 제안: 인공지능 인권 기반 접근

수학자인 캐시 오닐은 “수학적 모형은 본질적으로 과거에 기반을 두며,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제에 근거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인공지능이라는 수학적 모형은 과거 우리 세상의 불평등한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증폭시킨다. 비르하네와 프라부, 그리고 <확률적 앵무새의 위험>을 쓴 팀닛 게브루와 그 동료들은 “인공지능 시스템에 세상의 아름다움, 추함, 잔인함을 먹이면서 그것이 아름다움만을 반영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환상이다.”라고 강조한다.

유엔 빈곤과 인권 특별보고관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적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A/74/493). 첫째, 일반 인구집단의 행동에서 일반적으로 산출된 예측에 기반하여 개인의 권리에 미치는 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 둘째, 그런데 이 알고리즘의 기능이 대부분 불투명해서 인권침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 결국 이런 인공지능의 활용이 불평등과 차별을 강화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인공지능이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과 사회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한 규범적 대응으로 먼저 등장한 것이 윤리 기준들이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하여 리더십을 발휘해 온 기업 등 전문가들이 실행자 측면에서 비교적 자율적인 윤리 기준부터 인공지능 규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관련 교육 및 리터러시 활동도 우선 윤리 기준에 기반하여 이루어져 왔다.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인공지능 규범은 2020년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AI) 윤리 기준>이다. 인공지능 윤리 기준은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구현하기 위한 3대 원칙과 10대 요건을 제시하였다. 3대 기본원칙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① 인간의 존엄성 원칙, ② 사회의 공공선 원칙, ③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10대 핵심요건은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개발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① 인권 보장, ② 프라이버시 보호, ③ 다양성 존중, ④ 침해금지, ⑤ 공공성, ⑥ 연대성, ⑦ 데이터 관리, ⑧ 책임성, ⑨ 안전성, ⑩ 투명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윤리 기준이 구속력 있는 ‘법’이나 ‘지침’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으로서 ‘자율적’인 준수를 목표로 하였고,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고 인공지능 기술발전을 장려하며 기술과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강조하였다.

윤리 기준은 이 부분에서 인권 규범과 차이가 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18년 보고서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을 제안하였다(A/73/348). 특별보고관은 민간과 공공부문이 윤리 기준을 내세우려는 배경에 '인권 기반 규제에 대한 저항'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인공지능 윤리 이니셔티브에 인권 관점을 통합할 것을 요구하였다. 윤리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개념들이기도 하지만, 모든 국가에서 법률로 구속되는 인권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별보고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영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약을 만드는 모든 노력은 반드시 인권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기술 기업에 대한 인권 규범의 기초는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이다.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은 인권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 인권 존중에 대한 기업의 책임,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체계를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인권 보호 의무가 있는 국가는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사로서 부정적 인권 영향을 식별하고 방지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체계, 기업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 규범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초국적 기업 활동이 국내법의 집행력을 벗어나고 그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구제 공백이 발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인권규범의 모색에서 출발하였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들은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인공지능을 비롯한 글로벌 첨단 기술 기업에도 적용할 것을 요구해 왔다(A/HRC/59/32).

물론 인공지능에 대한 접근방식은 윤리 기반, 신뢰 및 안전 기반, 인권 기반 접근 등 여러 경로에서 병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인공지능의 개발, 활용 등의 수명주기에서는 이들 접근이 서로 배타적이기 보다 상호보완적으로 쓰일 수 있다.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원칙들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아직 자발적인 규범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기업과 인권 규범을 비롯한 인권 기반 접근은 시민사회의 꾸준한 개입으로 유럽연합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과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그리고 디지털서비스법과 인공지능법 등 구속력 있는 법률과 규제에 통합되기 시작하였다.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이란 무엇인가?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인간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목적과 산출물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점점 배제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권 기반 접근으로 기업과 정부가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획 단계부터 구현 단계까지 조사가 가능하고 이의 제기가 보장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관여하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2020년 보고서에서 인권 기반 접근이 무엇인지를 좀더 개념적으로 제시하였다.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은, △ 사람을 권리주체 개인으로 대우하고, △

권리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인권침해와 유린에 대하여 구제수단을 찾을 수 있도록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 법·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접근법이다.

영향받는 사람에 대한 권리 보장은 불투명한 빅테크 종속을 벗어나 공공성 확보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경찰의 공공장소 실시간 생체인식이나 직장과 학교의 감정인식 등 인권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미치는 인공지능은 국가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고용조건에 고위험을 미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정보를 제공받고 협상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적이고 개별적인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결정 과정에 영향을 받는 자가 참여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영향 받는 사람을 구제할 수 있으려면 인공지능 사업자는 규제 당국과 영향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충분히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잠재성이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규제 당국과 영향 받는 사람이 개별적 또는 공공적으로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결정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은 해당 결정의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며, 관할 당국에 진정을 제기할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을 규명하고 보장하기 위한 체계는 현장의 분투에 힘입어 조금씩 형성되어 왔다⁸. 한 축에서는 기업에 대하여 인권 규범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다른 축에서는 현장에서 폭로된 인공지능 비밀주의에 맞서 영향 받는 사람에 대한 설명가능성과 이의제기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분투가 이루어져 왔다. 산업계는 이러한 사회운동에 대하여 점점 거세게 반격해 오고 있다. 구글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그 어떤 기술보다 자율성과 적응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해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기술의 발전 경로를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의 설명가능성과 정확성의 관계를 상충관계(**trade-off**)라고 보는 주장들이 그런 경우에 속한다. 이 주장에 따르면 암진단 인공지능에 너무 구체적인 설명가능성을 요구하면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인공지능에 너무 많은 설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딥러닝처럼 복잡한 인공지능 작동 방식을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⁹. 그러나 이처럼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역시 인권 기반 접근의 원칙을 벗어나서 모색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인공지능이 사람과 사회에 가져다 줄 혜택에 대해 기대할수록, 인공지능이 사람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⁸ 국가인권위원회. (2022).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유럽평의회. (2024).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관한 유럽평의회 기본협약>.

⁹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5811502>.

향후 정보인권운동이 풀고자 하는 과제는 인공지능으로부터 영향 받는 사람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정보인권운동은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쟁취하기 위해 싸워 왔다. 그러나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개인화된 권리로는 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더불어 플랫폼으로, 회사 전체적으로, 인공지능은 시스템으로서 도입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사실상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집단적인 객체화에는 집단적인 권리로 응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등장하게 된다.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집단적이고 사회적으로 알 권리, 나아가 집단적이고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통제할 권리를 구성해 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하늬. (2025). “AI와 노동운동의 대응”. 제2회 AI 시민사회포럼: AI 민주주의와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 <<https://idr.jinbo.net/2175>>.
- 버지니아 유뱅크스. (2019). 자동화된 불평등. 북트리거.
- 케이트 크로퍼드. (2022). AI 지도책. 소소의 책.
- 유엔문서 A/73/348. (2018. 8. 29).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 유엔문서 A/74/493. (2019. 10. 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extreme poverty and human rights.
- 유엔문서 A/HRC/43/29. (2020. 3. 4).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Question of the realiz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all countries: the role of new technologies for the realiz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유엔문서 A/HRC/59/32. (2025. 6. 16).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to the activities of technology companies, including activities relating to artificial intelligence: Repo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